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□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 유지기간 3년으로 확대(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)

현 행	개 정 안	중견기업계 의견
현 행 제14조의10(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) ①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,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집위를 유지하되,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. 1.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: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.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: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	개 정 안 제14조의10(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)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	o 개정 노조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 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기간은 여전히 2년
날		력이 부족한 가운데 반복되는 단체교섭으로 추가 되는 업무와 교섭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이 가중 이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가능 하도록 하며,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